

여객자동차운송사업(시내버스) 개선명령

☐ 관련규정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)

☐ 개선명령 사항

- 운송사업자 : (유)라정버스
- 명령노선 : 33번
- 명령내용 : 정류소 2개소 미정차(붙임 참고)
- 명령기간 : 2026.10.31.(토) ~ 별도명령시까지
- 명령사유 : 대형버스 연제외춘 진입불가(중앙선 침범 등)

☐ 기타사항

-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및 안내문 부착 등

개선명령 사항 이후에는 종전대로 환원하여 운행하여야 함.